

「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2. 29(수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2. 3. 8(목)
- 다. 상정일자 : 2012. 3. 8(목) 제1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자치행정과장)

- 지방 별정직보건의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(행정안전부 예규 제380호('11.10.10))에 따른 별정직 보건의료원의 일반직전환을 위한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- 정원변동 세부내역

구분	총계	정무직	일반직	연구직	지도직	별정직	기능직
기 존	583	1	465	2	19	16	80
조 정	583	1	480	2	19	1	80
증/감	-	-	+15	-	-	△15	-

나. 기관별 · 직급별 정원 조정

- 기관별 정원 조정 현황 : 변동없음
- 직급별 정원 조정 현황

구 분	합계	정무직	일 반 직							연구직	지도직	별정직	기능직
			소계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			
기 존	583	1	465	4	24	119	142	111	65	2	19	16	80
조 정	583	1	480	4	24	121	148	118	65	2	19	1	80
증/감	-	-	+15	-	-	+2	+6	+7	-	-	-	△15	-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『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(행정안전부 예규 제380호)』에 따라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총 정원 583명은 변동이 없으며,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별정직 15명을 감하여 일반직 6급 이하 15명을 증원하는 것임.
-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80호에 근거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